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관할청의 지도·감독 권한의 강화가 필요하며,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과목별 채용규모 등을 관할청과 협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립학교법」 제43조에 따라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에 학교당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결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과목별 채용인원 등을 관할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과목별 채용인원 등에 관하여는 관할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 1) 관할청은 사립 초·중·고등학교 신규채용의 공공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고려하여야 함
- 2) 이에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신규채용시 과목별 채용인원 등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1항의 관할청과 사전협의 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진행예정(2020.3.26.~ 5.8.)

3) 행정규제 : 대상(규제영향분석서 참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하되, 과목별 채용인원 등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1항의 관할청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①법 제 53조의2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u>실시한다</u> .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①법 제 53조의2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u>실시하되, 과목별 채용인원 등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u> .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연 락 처	(044) 203 - 6481